

1. 개정이유

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‘기본계획’)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학교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32193호, 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)됨에 따라,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토록 하고, 교육부장관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, 대학 및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1조의2)

- 1)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
- 2)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계기관 · 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

나.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1조의3)

- 1)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,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
- 2)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,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,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

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

다.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(안 제23조의2)

- 1)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설립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
- 2)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부속병원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지정 가능
- 3)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00. ~ 1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, 제1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 제4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계 기관·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조의3(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법 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
2.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계획
3.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학교 지원사항
4.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(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
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④ 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부속병원
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
⑧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조직과 인력

2. 사무실, 장비·시설

3.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

4. 기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

⑨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

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
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 제4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계 기관·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3(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법 7조의2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</u>

<신 설>

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 계획

2.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

3.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학교 지원사항

4.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(학생건강증진 전문기

관의 설립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
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
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④ 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

립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부속병원
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
⑧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조직과 인력

2. 사무실, 장비·시설

3.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

4. 기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
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
정한 기준

⑨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
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생
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
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
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
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
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47